

의안번호	제 30 호
의결연월일	2008. 07. . (제 회)

의결사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발의자	강창남의원 외1
발의연월일	2008. 07. 07.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8~30
----------	---------

발의연월일	2008. 7. 7.
발 의 자	강창남의원외1

1.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가족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바, 이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부부교육·가족생활교육 등 지원 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수립(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

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 기본소양교육, 자활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군수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기관 단체와 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사업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

다. 그 밖에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지역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1.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가족
2. 거창군민과 외국인과의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3.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거창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경상남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군수는 거창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거창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5.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행정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제13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군수는 군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서비스 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 등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본소양 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 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거창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언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15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내의 부부간 및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자활지원) 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호의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결혼이민자가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등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있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법률·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사실확인,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아동의 보육) ① 군수는 아동의 보육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 등의 부(父) 또는 모(母)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② 지원센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지정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군수는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센터의 지리적 위치, 사업수행기관의 시설환경 및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방문교육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⑤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개별통지하고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통지 후 2주일 내에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기간 및 지정취소) ①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운영위탁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22조(지원센터의 업무) 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22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민간과의 협력)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거창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본다

[별지 서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현 황	법인명 (단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p>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top: 50px;">.</p> <p style="margin-top: 10px;">신청인 (인)</p> <p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1.2em;">거 창 군 수 귀 하</p>				